
전여대협 학내 성폭력 상담학교

일시: 1995년 8월 26일-27일

장소: 연세대학교

제1기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들어가는 말	1
강의 하나 학내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2
강의 둘 학내 성폭력 피해 상담	10
학내 성폭력의 구체적 사건과 대응사례	15
학내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대책	20
별첨자료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1심 판결문요약	24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2심 관련자료	26
성폭력 상담에 있어서 의학적 대응방안	28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32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현혜순(한국성폭력 상담소 열림터 실장)

학내 성폭력의 개념

학교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강간,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1) 성적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장)의 조건이 되는 경우,
- 2) 성적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장)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성적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실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94%가 성폭력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의 스트레스의 1위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 8월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 49%, 학교 친구가 44%, 후배가 3%등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이 차지했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로는 과장,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 15%, 뒤풀이 장소 39%, MT- 야유회 중 19%, 하숙방 3%, 도서관 6%, 식당 4%, 강의실이 2%, 복도가 3%, 학내 한적한 곳 4%등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모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은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8000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성폭력이 30%, 근친성폭력이 18%, 직장내 성폭력이 11%, 테이트강간 5%, 기타로 위의 현실을 입증해준다. 상담소 개소이래 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상담, 교수의 성폭력 상담, 선후배, 동료간의 성폭력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학내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 빈도는 높지만 철저히 은폐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후에도 봉건적인 정조 관념에 의하여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복잡한가를 생각해 한다. 강간 따위의 심한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일상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비밀비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은 때와 장소, 형태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내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같은 문제를 가지면서도 학내라는 특이성을 또 내재한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번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은밀한 장소에 의해서 범죄자들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학교에서 지성의 상징인 교수에 의해서 일어날 정도로 성폭력이라는 질병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수와 제자사이의 성폭력이라는 의미와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를 함축한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의 형태가 강간이나 추행과 같이 노골적인 방식을 띠지 않더라도 그 형태에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울대의 경우처럼 한 학교단위나, 지구,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들과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많은 한계를 가졌으며 이에 전여대협에서 전국단위에서 학내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 첫 시발점이 될 학내성폭력 상담학교에서 강의와 토론, 영화상영으로 많은 교양이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기중 학교단위에서 학내성폭력 근절의 내용을 하반기 사업속에서 진행해 나가면서 여학우들(교직원)들의 삶을 움아매고 있는 성폭력을 마침내 근절시켜낼 수 있도록 하자.

이 감주어진 상태이다.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 학생만 개인적 자구책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옮기거나 피해다니는 소극적 대응 방법으로 졸업식 날까지 건디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학교당국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해줄기를 학장,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동료 교수만을 보호하고 두둔할 뿐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실상에 학교당국, 교직원,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되는 기회를 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글에서는 학내에 만연된 성폭력을 다루어가되 서울대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리를 직장내 성희롱과 연결하여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학내 성폭력의 유형

1)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을 통해서 본 직장내 성희롱

①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원래 Sexual Harassment 를 번역한 것으로 성적인 지분거림, 성적성가심, 성적 괴롭힘, 성적학대, 성적농락, 성적모욕, 성적희롱의 의미이다. 미국에서는 아주 가벼운 희롱에서 강압적인 형태의 강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말의 성희롱보다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성폭력 개념이다. 흔히 성희롱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성적접근으로 가장 빈번히 그리고 전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곳이 직장이다. 대부분이 상사의 지위에 있는 남성이 가해자가 되며 고용이나 기타 직무상의 권한으로 종속적, 하위직에 있는 여성의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채용과정에서 부터 직장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한 성적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 모욕감을 주어 인격을 침해하고 근무환경에 방해가 되어 고용상의 불이익을 유형, 무형으로 주는 것이다. 성희롱의 심각성은 성희롱에서 시작하여 강간으로 이어지는 성폭력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성적자율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노동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② 성희롱의 기준

성희롱의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원하지 않았고 합의가 안되었으며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한다. 성희롱은 어느 정도 주관적이고 해석적이며 상

황적 개념이므로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융통성 있고 반드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내려져야 한다.

③ 객관적 판단의 기준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문은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희롱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간의 관계를 투쟁적 대립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 관점을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남녀관계는 공동적 화합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판결문의 관점은 합리적 여성의 시각 = 여성주의 = 남녀관계의 투쟁적 대립관계로 평가하며 합리적 여성의 시각과 일반평균의 시각을 대립적으로 판단한 판사의 시각이 문제이다.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합리적 인간이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3명의 여자가 성희롱이라 생각하고 1명의 남자만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일반 평균인의 입장은 일반 평균여자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성희롱의 요건

성희롱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건 성립이 쉬어진다. 그러나 단 1회의 성희롱도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면 성립된다. 그러나 성희롱 여부의 결정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모든 주변상황(행위의 성질과 형태, 행위주체, 피해자의 대응, 행위가 행해진 상황)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한다.

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고용조건형-- 성적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용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달라진다.

- 임금지급, 임금인상 방해, 부서이동, 업무내용악화, 평가절하
-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정규직화

노동환경형-- 원하지 않은 성적언동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직장환경조성하여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 음란한 눈빛, 음담패설, 신체접촉, 원하지 않은 키스, 포옹
- 포르노 사진 들려보거나 전시, 누드사진 부착, 성적봉사요구

2) 교수와 제자 사이의 성폭력

① 교수와 제자 관계의 특성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성폭력의 실상이 은폐된 채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 특

히 학교 내의 성폭력(그 중에서도 교수와 제자간) 문제는 학교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점관리, 학위수여 여부결정 등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며 이러한 인맥위주의 교수 사회의 특성상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접촉이 잦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만큼 교수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② 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 - 문제해결의 어려움

학교사회의 특성상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많은 회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실행에 옮길 수 없다. 또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가 어느정도의 성폭력인지를 가늠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1981년 아이오와 주립대학 여성위원회 성희롱 조사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의 육체적 접촉	-- 7%
말에 의한 성적요구	-- 17%
결혼질, 기타 성적 느낌	-- 34%
필요이상의 관심, 회롱	-- 43%
성적발언의 대상	-- 65%
담당교수의 호색한	-- 13%

(단 한 명의 학생도 학교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교수와 제자간의 성폭력은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과는 본질적으로 그 맥락이 틀리다. 이는 교수의 지위와 위치를 이용한 권력 관계의 남용 행위인 것이다. 교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는 교수와 이어지는 여러가지 연결고리 때문에 교수의 성적접근을 선뜻 거절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한 존재이다. 학점에 대한 불안, 자신의 성장거점 와해에 대한 불안, 자존심의 상처, 보복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 또한 일반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성에 대한 회의, 성적 사건과 관련된 부끄러움, 수치감, 항의시 사건 진상보다는 성적인 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것에 대한 두려움, 설사 학교에 알린다 해도 아무런 대책 강구를 안할 것이라는 생각, 자신의 피해가 성희롱 내지는 성폭력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모호함때문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구조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③ 문제의 심각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수에게 막강한 권력과 고유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며 기본적으로는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도덕성을 믿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자. 우선 피해자의 **피해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게 남는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게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수의 지속적인 가해**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수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때 그 보복성으로 지속적인 가해가 있을 수 있다. 교육을 받기는 커녕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게 된다. 이것은 개개의 학생들이 받는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적 자원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게 될 때 학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낳는다. 스승에 대한 불신, 배신감과 사회 최고의 지성이요 양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의 비도덕적 행동에 의해 사회의 윤리 도덕도 혼란을 겪게 된다.

교수에게 수차례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그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④ 영향

가.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결정 등을 미끼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나.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결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라.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학생들 간의 성폭력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생활 환경적인 의미를 많이 지닌다. 어떠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보다는 잘못된 성의식에 의하여 일어나는 유형들이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면에서 일반적인 성폭력의 유형과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미성년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행위의 발생 원인이나 행위 형태, 그리고 해결책 등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개인의 특성이나 각 집단의 문화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① 공공 모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에서부터 저질 노래 부르기,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성적 접촉의 강요 등이 해당하며 심지어 MT등에서의 강간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행위를 하는 이유 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근본적으로는 여학우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다는 생활의 활력소 정도로 여기는 풍토때문이 아닌가 본다. 비록 그러한 행위가 고의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명백한 성폭력이다. 피해자는 인간관계가 소극적이 되거나 심지어 그 과나 동아리, 동문회 등에 다시 안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 모임에서의 성폭력은 군사 문화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인지 별 생각없이 그냥 따라 배우는 경우가 많다. 알게 모르게 이성을 대상화하게 되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성폭력 행위를 집단적으로 전수까지 한다는 것이다. 동문회의 경우 이런 일들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신입생들을 창녀촌에 가서 '총각 딱지'를 때 주는 것을 후배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과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군사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과노래 가운데 군대에서 흘러들어온 저질 노래가 있는가하면 퇴폐적인 뒤꼍이 문화가 선배들의 방조 또는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신입생 교육의 명목으로 신입생들에게 기합을 준 후 마지막 교육 코스로 여학생이 많은 과 앞에서 집단적으로 오줌을 누게하는 등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가 매우 남자답고 호탕한 것으로 둔갑하고 있다. 군사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일 수록 성폭력이 많다는 것은 성폭력과 군사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요즘은 많은 단체들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바꾸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학생들을 모임의 활력소 정도로 여기는 모습이라든가 군사 문화의 잔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각 모임들은 자신들의 모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모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서클버스, 화장실, 도서관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다분히 고의적인 행위로서 음란하고 불쾌한 눈빛, 성기 노출, 음란 전화, 팩스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성폭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신의 억눌린 성적 욕구를 다분히 퇴폐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의미이다. 일종의 성도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는 사회적 제재와 정신적 치료가 동시에 요구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릴 때 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요구되며 학내에서도 지속적인 교양작업이 필요하다.

③ 개인적인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행위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속에서의 성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남녀 관계에서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의식이라든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 바탕하여 일어나며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육체적인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성폭력인가의 여부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나 하는 것보다 그 행위가 고의적이든 결과적이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는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가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피해자 쪽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매우 중요하다. 정말로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고 행하는 가해자도 꽤 많기 때문이다.

예방과 대책

1) 개인적 대책

①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각 공식적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 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폭력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 시 학과장, 학장, 총장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같은 피해자, 목격자를 찾아낸다.

② 약생의, 여성단체,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한다.

2) 학부모의 역할

- 학장, 학생처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있게 해결 안될 시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딸을 참석시킨다.

3) 집단적 예방대책

①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정의, 사례를 정식 문서화한다. 해도 좋은 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목록 작성

② 성폭력 발생시 해당교수에게 양의한다.

③ 학과장, 학장, 위원회에 정식 양의서를 제출한다.

④ 지침서, 기숙사 프로그램, 공개강연, 게시판, 특강, 공개토론, 대약 신문 등에 성폭력 관련 사항을 홍보하여 여론화에 주력한다.

⑤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 요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열을 알고 얼마나 달려있다.

⑥ 학내 성폭력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데이트 강간의 예방과 대책

- ①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② 데이트하는 도중에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
- ③ 상대나 상황에 따라 성적행동의 한계를 변동시킬 수 있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 할 수 없음을 믿는다.
- ④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없이 함께 숙박업소의 방을 이용하지 않는다.
- ⑤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해 질 의사가 없을 때는 그의 집에 가거나 그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 피해상황에서의 모면책

- ① 강간 상황에 처했을 때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
- ② 자신의 행동지침을 결정한다. - 저항이나 포기나
- ③ 위협을 빨리 감지하고 그 즉시 행동한다.
- ④ 여러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한다. - 소리지르기, 힘으로 저항하기, 도망치기

★★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①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로 받아들인다.
 - 이것은 성교, 키스, 에무 등의 모든 성적 행동에 적용된다.
 -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 성적 행동은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한다.
- ②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 ③ 암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④ 술, 마약 복용시 성관계를 피한다.
- ⑤ 강간을 일으킬 수 있는 어휘나 은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학내 성폭력 피해 상담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26일 학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에서

1. 성희롱의 개념
2. 유형과 사례
3.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학내 성폭력 피해 상담에서의 유의점을 논의해보자.

1. 상담의 목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그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나 책임이 아니라 남녀 불평등 구조의 왜곡된 성인식과 사제간의 권력구조에 의한 여성인권예 대한 폭력임을 인식하게 하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학업생활을 영위케하며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활성화, 촉진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학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학내에서 성폭력을 추방하는데 그 목표를 가진다.

2. 상담활동의 역할과 방법

전통적 상담에서는 문제 발생 후 진단, 치료하는 소극적 모형이 많았으나 발달적 모형에서는 개인의 발달과정과 성취에 도움이 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대다수의 정상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보나온 성장발달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상담활동의 역할은

1) 개인상담

면접, 서신, 전화를 통해 신고접수, 의료적, 법률적 자문, 심리상담을 한다.

2) 집단상담

피해자 집단상담, 의식화 그룹(C.R), 피해자 부모 프로그램, 피해자 파트너 프로그램 등 집단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이 경험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서로 나눔. 집단작업을 통해 분노표출, 느낌의 공유로 이질감 고립감 해소, 서로간의 이해와 지지로 자기비하감, 죄책감 해소, 자기노출, 자기표현, 자기주장,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태도의 변화, 정체감의 회복,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3) 교육 훈련 프로그램

무지, 두려움, 회피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변화를 창출하도록 돕고 그 변화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학강좌, 남녀평등교육, 자기주장,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 호신술 방어교육 등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신입생, 남녀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회, 공청회를 제공한다.

4) 조직개발 및 연대활동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학생회조직에서 조사위원회나 성폭력 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실을 활용한다. 사안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연대, 학생연대, 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의 연대, 병원 법률 자문위원회와의 연대, 학부모와의 연대를 하여 학생지도자간담회, 학교 경영자 간담회, 거리캠페인, 시위 등을 추진한다.

5) 조정과 규제

학내성폭력의 기준, 범위, 징계방법 등 제재정책을 수립하여 학칙에 처벌규정과 징계회 부권한, 보상조치의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인 / 피신고인에 대한 비공식적 조정, 공식적 조정 등을 협의, 결정 추진하며 학교당국에 처리를 요청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6) 지원 후속처리

의료적, 법적 절차에서의 연계 지원활동, 보상조치, 징계조치의 이행 결과확인, 학내 시설구비 강화(산부인과, 정신과병원, 상담전문가, 경찰, 변호사 연계, 경비강화, 가로등 실내등의 확보, 셔틀버스 야간운행, 화장실 보수 등)

7) 홍보

지침서 발간, 예방포스터 부착, 학내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남녀차별적 구조의 변화 유도, 여론화 작업

3. 성폭력 피해 일반적 후유증

1) 정서적 증상

피해장소, 남성, 성에 대한 공포, 불안 분노 적개심, 공격성, 부자연스러움, 죄의식, 순결 상실감, 자아존중감, 수치감, 허무감, 피로감, 탈진, 과민방응, 우울증, 불면증, 수면장애, 악몽, 섭식장애, 비탄, 성욕의 결핍, 퇴행, 열등감, 자기혐오감, 비통합적 자아정체감, 분열증, 피학대음란증, 살인 및 대인성 폭력, 자살충동.

2) 신체적 증상

두통, 피로감, 위통, 메스꺼움, 강박적으로 씻기, 질과열, 가려움증, 요도통, 일반적 동통, 출혈, 임신, 성병, 낙태후유증, 병적 식용과단(비만), 식욕감퇴(거식증)

3) 행동상의 변화

과도한 성적 호기심, 자위행위 증가. 부적합한 성적행위, 불감증, 성관계에서의 불만족, 성관계기피, 배우자와의 불화, 이성교제, 결혼기피, 대인기피, 진밀한 관계형성에 지장, 사회적 고립, 학습장애, 무단결석, 학업포기, 약물 의존 및 중독 알콜중독, 실어증, 학업, 직장 가사, 자녀양육 수행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의 불안, 원치 않는 결혼, 가해자와의 결혼, 치료비 등 재정상의 손실, 가출, 윤락가 유입, 비행청소년, 가족관계파괴, 이혼, 구타

4. 학내 성폭력 후유증의 특성

1) 교수 제자간의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 예능계, 도제관계에서 많이 발생.
: 수강취소, 진로포기, 무력감, 분노 불쾌

2) 동료, 선후배, 데이트, 교제 등에 이루어질 때

: 생활환경적 분위기, 잘못된 성인식에 기인. 공공모임, 동아리모임에서의 음담패설, 성적접촉, 데이트강요, 강제 성행위 음란가요, 음란컴퓨터, 거짓소문, 등
: 동아리 탈퇴, 휴학, 자퇴, 혼돈, 자책감

3)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질 때

: 고의적, 의도적,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도서관, 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
: 공포, 불안, 행동반경 축소, 불신,

: 직장내 성폭행, 데이트 성폭행의 특성화 비슷
: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가슴 편다. 식은땀, 불면증, 두통, 알레르기, 노이로제 등)

5. 상담자의 입장과 태도

1) 상담원리

상담이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문제해결과 성장을 돕는 전문 기술을 가진 상담자와의 만남의 과정이다.

2) 상담과정

① 문제의 제시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배경과 관계요인을 토의하여 내담자의 내면적, 비언어적 감정을 파악한다.

② 촉진적 관계 형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표현한다.

③ 목표설정과 구조화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화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한계를 설명한다.

④ 문제에 대한 노력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⑤ 자각과 합리적 사고의 촉진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조망을 할 수 있게 한다.

⑥ 실제행동의 계획

실제생활에서 실행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절차를 협의하고 계획을 작성한다.

⑦ 상담결과에 검토와 종결

그 동안 성취한 것, 변화한 것을 검토, 요약, 평가한다.

3) 성폭력상담의 특성

- 1) 위기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 2) 성문제 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 3)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적, 법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4) 성폭력 상담의 내담자는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내담자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인간관계나 자아개념 등에 오랫동안 심리적 상처를 주기 쉽다. 그러므로 성폭력상담은 피해자 중심 상담, 여성 중심상담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1) 피해자 중심 상담(내담자 중심)

상담과정을 통해 상황의 탐색, 이해, 문제해결의 단계를 거칠 때 항상 내담자의 요구와 상황을 우선한다.

- 개별화: 내담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고 느낌, 욕구와 경험을 지닌 한 개인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상담자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 감정에 대한 자유로운 표출: 피해여성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필요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 비판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 감정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전달해주어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해 준다.

- 자기 결정: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그녀의 존엄성을 신뢰한다. 그녀가 힘을 갖출 수 있고 강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

- 비밀 보장: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엄수한다. 조정이나 가해자 처벌이나 사례연구시 내담자 본인의 요구와 허락 이후에 추진해야만 한다.

(2) 이성중심의 상담

-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 피해여성은 상담원과의 따뜻하고 신뢰받는 관계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다. 상담원은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권력이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동등한 관계, 자매애)

- 상담원은 피해여성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

-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폭력이 그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해하게 하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 패배적 감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의식화)

- 내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 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 피해 여성들은 대개 위축되어 있거나 부정적으로 투쟁하려 한다. 이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 느낌과 생각을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과 단점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점검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결과와 위험에 대해 예기해 본후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받들이도록 한다. 이때 책망, 비난 섞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상습적 위로, 무책임한 권고 등을 지양한다.

-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알린다. 단 피해여성을 도울 목적에 한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서 다른 상담원이나 기관에 의논하도록 한다.

학내 성폭력의 구체적 사건과 대응 사례

<교수와 제자사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항의를 못하는 경우(94년 7대)

나는 1학년 때 S 교수와 여러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S 교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그 옆에는 서로 앉지 않으려는 선배 언니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S 교수 옆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S 교수가 어깨에서 (목부분에 가까운 어깨)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노래방 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창피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왜 선배님들이 서로 앉지 않으려 했는지도 그때 알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선배들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S 교수 옆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 전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칙이 되었다.

끝으로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선배님이나 나 자신도 그런 일을 우리 전임교수하는 이유로 아무말도 하지 못했었다는 자체가 지금은 너무도 부끄러워 진술서를 쓰게 되었음을 밝힌다.

<학생들간의 성폭력>

도서관 열람실 성추행 사건(S대)

도서관 열람실의 칸막이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의 남자가 나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다. 나는 그때 소매있는 반팔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로 손이 닿은 줄 알고 팔을 약간 움츠렸을 뿐 그대로 공부를 계속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2-3번 나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다가 나의 어깨를 안으려고 하였다. 내가 다시 몸을 피하였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내 엉덩이를 만졌다. 나는 일어나서 학번을 붙고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그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다. 나는 그 사람의 책을 챙겨두고 도서관을 나

오면서 그 사람의 자리에 5시에 장터국수에서 만나자고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 이후 나는 총학생회로 달려가 상담했고, 5시에 그 사람을 만나 총학생회로 가서 진술서를 받고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사건을 공개했다.

•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모 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어떤 남학생 선배 한 명이 후배들에게 음란가요(속칭 삼신가)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줬다. 화가 난 신입생 여학생이 전체 뒤줄이 자리에서 과학생회와 그 남학생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항의를 받아들이고 학생회 차원에서 신입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더 이상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여학생과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모임 문화를 바꾸어 나간 좋은 사례이다.

•선배의 데이트 강요사건

신입생때의 일이다. 과 선배가 '착하다, 귀엽다'며 나에게 접근해왔다. 혼자있으면 음료수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며 호의를 보여왔다. 그러던 가운데 선배의 눈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둘 만의 시간을 갖자며 교제를 요구해왔다. 때로는 불쾌한 표현(언어적)을 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해왔다. 겁도 나고 해서 피하게 되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과 내의 여학우 상당수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 사운데 한 친구는 정신적 피해가 커서 일상적 생활을 못하였다.

•컴퓨터 음란물을 이용한 성폭력 - 전산실의 누드 사진 PARK 프로그램

전공공부와 레포트 작성등을 위해 전산실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다. 일을 마치고 park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음란한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다. 완전히 별거벗은 여자의 모습이 사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이 선명하고 세밀하게 화면에 나타난다. 그럴때마다 민망하면서도 많은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전산실 컴퓨터에 음란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 행위는 포르노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보임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이다. 매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인지 (즉 잡히거나 들릴 위험이 없기 때문)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92년 6월 PC 통신에 음란물이 게재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매체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이 아닌가 살펴보아야한다.))

•언어적 성폭력

1학년 때였다. 어느날 저녁 좌석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동문선배와 옆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게 되었다. 그 선배는 모임이 있었는지 조금 술은 마신 모양이었다. 몇가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뒤 선배는 자신의 연애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곧 애인과 의 육체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입을 맞추면 어떻고, 어디를 만지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민망할 정도로 자세히 늘어놓았다.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너는 해봤나?, 해보고 싶지 않느냐?, 가르쳐 줄까?" 따위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날은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그 뒤로 그 선배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동문회를 나가지 않았다.

•화장실 성추행

여자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은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놓아야 할 만큼 캄캄하다. 어느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언가 기분이 이상해위를 쳐다보니 시키면 남자의 얼굴이 칸막이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는 급히 도망쳤다. 비명소리에 주위사람들이 뛰쳐나와 도망가는 남학생을 잡아 신분을 조사하였다. 경영대 88학번이라고 밝힌 그 학생은 불일이 급해 남자화장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측은 남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마해버렸다.

•성폭행 사건의 접수와 총여학생회의 대응사례(95년 연세대)

1. 사건 개요

사건은 95년 4월에 있었다. 한 94학번 여학우가 자주 가서 술도 마시고 잠도 같이 갈 수 있었던 남자 동기들의 하숙집에 갔다. 그 곳에서는 여러 명의 같은 과 동기와 후배들-모두 남자들이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많이들 취해 있었고 새벽 4시정도에서야 술자리가 파하고 잠을 잤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좋지 않아 그 여학우는 깼다. 깨서 보니 두 95학번 남학우가 가슴과 지퍼에 손을 넣고 만지고 있었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소란이 일자, 그 자리에 있던 학우들이 깨어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술에 너무 취해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여학우는 그날 중으로 사과 자보를 과방과 ~~문~~대방앞에 게시할 것과 반성문을 과 날적이에 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여러 가지 상황 - 주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으로 인해 이루어 지지 않고 한 남학우는 집으로 내려가고, 한 남학우만이 남아서 피로와 하고

있었다.

이후 여학우는 과에서 도저히 일이 진행될 수 없음을 알고, 총여학생회로 직접 신고를 하였다. 신고는 총여회장이 받았으며 이에 기본적인 1차 면담을 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 요구를 접수하고 곧 여학생처에 연락을 했다. 그 와중에 과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고 움직임이 있어 총여또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처로 신고를 접수시킨 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로 문제가 이양되어 피해자가 직지 않은 부분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 했다.

2. 성폭력 상담 시스템 운영에 대해

현재 여학생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 시스템은 지난 94년에 총장 간담회를 통해 총여학생회(이후 총여)에서 총장에게 직접 건의한 사항이 통과되어 여학생처에 성폭력 상담 전화를 개설시킨 것이다. 그 과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지난 1994년에 총여는 매달 한 번씩 있는 총장 간담회를 통해 참으로 많은 성과들을 얻어냈다. 총장 간담회는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각 부처의 장과 총장, 학생대표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테이블이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중에 성폭력 상담 전화 개설, 도서관-기숙사 셔틀버스 운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면에서는 성폭력 상담 전화 개설전에 대해서만 소개하겠다. '연세 여상'이라는 총여 신문에서 몇 번의 연세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2학기에 있었던 연세인 의식조사라는 폭넓은 조사에서 성폭력에 관한 설문항목이 있었다. 그 설문조사 결과 표본이 100명밖에 안 되는 자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9%가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하였다고 조사되어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실은 학내 출입 기자들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3개 방송사가 앞다투어 8시와 9시 메인 뉴스에 방송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문화방송만이 성폭력에 대한 넓어진 개념을 설명하면서 올바르게 방송되었고, sbs, KBS는 엄청나게 왜곡된 성으로 표현해 총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총장 간담회를 통해 요구된 핫 라인-성폭력 상담 전화-의 설치를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방송 후 즉각적으로 해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해 여학생처에 전화를 개설시키고 기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여학생처 직원이 상주하는 상담위원을 대신하기로 했다. 여학생처에서 운영되는 상담 시스템은 다음의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상담 위원회, 운영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가 그것이다.

3. 처벌 과정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나의 사건이 신고, 접수되면 가동되는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위원회, 책임 교수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징벌의 경우 회부되는 학교내 상벌분과 위원회가 그것이다.

7. 여학생처 신고 접수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여학생처장님이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1차적인 신고내용을 접수부에 기록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당사자와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다.

나. 상담위원과의 상담

이후 상담은 전문 상담위원 중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고 이에 신고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절차까지 준비해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력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상담 위원도 이에 동의, 운영위원회에 올릴 것을 약속했다.

다.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담위원의 발제와 처벌 요구등이 전달되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처벌이 법적으로 결정된다. 피해자와 상담을 한 상담 위원이 여기서 피해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건의 개요와 더불어 이 문제가 가지는 사회적 심각성과 학내 성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처벌이 결정되었으며 이 문제는 상벌분과위원회로 상정되었다.

라. 상벌분과위원회에서의 결정

그 처벌의 수위를 상벌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공문이 집으로 전달되고 이에 따라 처벌이 집행된다. 상정된 이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근신 2주의 처벌을 결정했으며 이는 행정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4. 글을 마치며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총여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분명히 총여와 여학생처가 공동으로 얻어낸 성과물인 성폭력 상담 전화 개설은 이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총여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미 위원회 체계상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총여가 피해자를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연세대학교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총여가 상담을 담당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학우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 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총여학생회(그의 학생회)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 대자보선전이다. 대자보가 붙자마자 학우들은 별 때같이 모여들어 대자보를 유심히 살펴본다. 그러나 학내의 심각한 성폭력의 사건을 알려내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 흥미거리로 전락이 되기도 하고, 대자보가 떨어지고 나면 또 그만이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유형의 성폭력이 학내 어디에선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의 반복을 끝내자. 남학우가 기분전환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이 작은 일이 아닌 바로 큰 범죄이고, 그것도 성을 매개로한 더욱 야비, 악랄한 폭력이며 그 피해자는 전체 삶을 좌우지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라는 분위기를 학내에서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이러한 학내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고리를 최대한 찾아서 예방하고 급기야는 학내에서 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1) 제도교육 — 전공교수, 여성학의 세분화, 여성학의 필수과목화로 전체 학생들의 여성학 교양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여대협 수련회에서 실시한 실사 설문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성학 강의가 있고 학우들의 호응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가 한, 두과목이 대부분이고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강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과목도 여성학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학교도 있었으며 있던 강좌가 폐지된 경우도 있었다. 여성학 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6-7개의 강의를 개설되어 있어 내용면에서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 강사의 경우에도 총여학생회에서 추천한 강사로 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성학 강의는 남녀 학우들이 함께 여성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열린 장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실천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명목상만의 여성학 강의가 아닌 전문 강사의 채용과 여성학의 세분화, 그리고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자치교육 — 시기 적절한 강연회, 공청회, 토론회등으로 올바른 성의식, 성문화를 만들어가자.

여성학 강의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학회, 동아리 혹은 학생회의 교육활동속에 다양하게 여성학 관련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교육의 보수성과 경직성을 대신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대안이 바로 자치교육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폭력의 대부분이 선배나 친구에 의해서 과, 동아리방, 뒤풀이 장소, MT장소 등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체 학내의 성의식과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한 인간관계로 끈끈히 묶인 공동체로 여기는 곳에서, 성폭력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할 곳에서 도리어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하고서도 뒤풀이에서 술 한잔 먹고나면 음담패설-음란가요를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문제다.

공동체 문화속에서 건전한 성의식,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3)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건전한 성의식의 교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중의 하나가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입학교육이다. 미국 등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폭행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는 피해 방지 차원도 있지만 가해 가능성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에 대한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첫 대학의 문턱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동료학생(이성)을 자신의 성적만족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성문화,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강력히 학교측에 요구했을 때 충분히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성폭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학내의 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하자.

- ①실내 복도나 학내 곳곳의 가로등을 더욱 밝게하고 갯수도 늘려야 한다.
 - 회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의 교정은 여학우들의 밤길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다.
- ②야간에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늘려야 한다.
- ③여학생 화장실을 성추행이 불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
 - 칸막이 너머로 옆칸을 넘볼 수 있게 되어 있거나, 바닥부분이 땀 흘려 있어 불안요

소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화장실 문고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경우 등 성추행 발생의 제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④학내 규찰대 등 학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5)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등의 규제안이나 학칙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대의 설문조사에서 학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강화는 신고소 혹은 상담소 설치, 성교육 강화와 함께 성폭력 방지책으로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학생의 경우에는 퇴학과 정학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징계를 원하는 파면이 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강한 처벌은 가해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학생 혹은 학교측에 신원이 알려지거나 징계를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아직 학교 학칙내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규제안도 없을 뿐더러 학교 당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인색한 형편이다. 학생이든 교수가든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가 아직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남성중심적 성의식 속에서 '혈기왕성한 남성이 실수로 해볼 수도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교는 성폭력 사건을 가늠하면 모른체 하거나 알게되더라도 대중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폭력은 결코 우발적인 충동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시작한 성폭력적인 성적 언행은 무의식중에 혹은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된다. 가해자는 어김없이 이전에도 그러한 유형의 성폭력을 자주 행해왔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어떤 가해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가 싫을 때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풀고 무료함을 달랠다'는 진술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상습범이고 한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기에 학내 성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가 징계를 위한 징계에만 머무르는 것을 막기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을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기관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6) 학내 성폭력 신고, 상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많은 학교 총여학생회에서 핵심공약사업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 상담전화나, 상담소 설치를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전국에 학내 성폭력 신고, 상담기관이 제대로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다만 작년 연세대학교에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연세대에서 성폭력 상담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작년 총여학생회에서 학내성폭력에 대한 대학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 사실은 학내 출입 기자들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총장간담회를 통해 이 해결책으로 학내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측에서는 핫 라인- 성폭력 상담전화 -의 설치를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문화방송사에서 성폭력에 대한 방송을 할 즉시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에 의해 여학생처에 전화를 개설시키고 기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여학생처 직원이 상주하는 상담위원을 대신하기로 했다.

학교 당국은 아직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 덮어두고 있던 일로 하려고 한다.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학교당국의 현실.

이러할 때 누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당당히 신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는가? 또 이렇게 덮어 두기만 할때 학내 성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주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내의 성폭력 실태를 알려나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여론화 시켜나갈때 성폭력 예방에 무관심한 학교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1심 판결문 요약

I. 원고 피고측 주장

1. 원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었는 바 이는 원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하기 쉬운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서 해임으로 직장까지 잃게 하였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심한 접촉은 없었다. 다소간의 접촉은 있었으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의 아닌 접촉이거나 교수-조교사이의 순수한 친밀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았다. 또 피고 본인은 기기담당조교의 책임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다.

II. 사실인정

1. 사실인정의 어려움

이것은 원고와 피고 신교수 두사람 사이에서의 문제이므로 제 3자가 알기 어렵다. 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고민하였다.

2. 인용증거의 문제

1) 원고 본인 신문결과 진술서 등

본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신뢰성이 문제이다. 시간이 흐른 후의 진술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할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도 자기회면에 걸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되는 수도 많다. 그래서 민사소

송법도 본인의 진술은 보충적인 증거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하였다.

2) 증언 柳모씨(원고측)의 진술

우리나라 현실에서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가 발붙일 곳은 아무 학교도 없으리라는 것은 오히려 맞으리라 보고 그럼에도 지도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간다고 본다.

3) 증언 蔡모씨(피고측)의 진술

피고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며 원고의 책임용 탈락은 원고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피고가 남녀노소의 아무앞에서나 성에 관한 농담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이하고 하여 피고의 평소 성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 증언 ○ 모씨(원고측)의 진술

○ 씨는 처음에 피고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는 진정서를 원고측에 만들어 주었다. [단둘이만의 식사제의, 기기사용 교육시 포옹자세, 산책제의, 남한산성 가면서의 신체적 접촉, 후가기간의 동반여행 제의, 그 거절 후의 태도변화 및 출근 중지지시]

3. 인정한 사실

1) 신체적 접촉영역=NMR 기기 교육과정에서의 포옹하는 듯한 자세 20~30회, 어깨에 손을 올려 놓거나 등을 쓰다듬기 손잡기(원고가 명시적은 아니나 그렇게 느껴지거나 몸을 뻗어 제의), 실험실에서 땅은 머리 만지작거림

2) 무영적 폭력

심부름으로 연구실에 들어오는 원고를 아래위로 훑어 보았다. 둘만의 입방식 제의, 산책제의, [연구실에서 옷갈아 입어라]요구-원고[싫어요]라고 거부.

3) 원고 거절 후의 피고의 보복적 태도

원고업무보고 등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원고업무수행에 쓸데없는 트집을 잡음, 원고책상을 실험실에서 기기실로 옮겨 혼자 근무토록 함.

4) 실질적인 예임(책임용 거부)

선임절차상 기기담당교수인 피고가 사실상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수가 추천안 하면 임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시료측정지연, 공무불성실, 대인관계 불원만 등을 책임용거부 이유로 드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때 진정한 이유는 성희롱의 보복으로 보인다.

III. 법률적 책임

직장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인사권을 가지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명, 직장내에서의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다음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에 든다.

① 직장-작업현장, 기타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주위사람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성적 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거나 불쾌한 성적 접근 기타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동을 하며, 이에 대한 복종-거절이 고용여부-근로조건 결정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

③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외부적-정신적으로 불쾌하고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IV. 위자료 산정근거

NMR기기 담당조교 선발과 재임용에 실질적 권한 가지는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① 신체적 접촉 그 횟수가 20~30회, 무형적 폭력, 원고의 거부후의 부당한 실질적 해임

②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실험실 연구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

③ 원고의 책임문제=왜 적극적인 대항을 안했나 - 이것은 사실인정에서도 문제되나 위자료 액수 참작사유로 된다.

—1심 9조 64, 3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2심 관련 자료

'성희롱' 피해자쪽 입장에서 판단해야

심영희(한양대 교수, 범죄 사회학)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고등법원 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그동안 지속됐던 성희롱에 대한 억제효과를 해지시키고 직장내 성희롱의 면

죄부를 발부하는 사회적 효과를 물고와 직장여성의 숨은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이 판결의 근거가 된 규정과 가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제시한 '성적 괴롭힘'이란 용어에 의하면 이것은 "고용관계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성적 언동이 있고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야 한다"고 축소 또는 한정돼 있다.

즉 성희롱은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한 기준 요구는 무리

이것은 가해자의 범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런 범의를 밝히기란 너무나도 어렵다. 바보가 아닌 이상 "나 성희롱 하겠소"하고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엔 없을 것이고, 업무상 필요나 친밀감의 표시로 위장하거나, 이에 편승해 성희롱을 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성희롱을 구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과연 성희롱이 있었는가를 누구의 관점에 의해 판단하는가의 문제이다. 재판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5~6회에 걸쳐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줌 업무수행에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올 정도가 아닌 '경미한' 정도였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피해자 여성'이 아닌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서구희롱이 노골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지에서는 직위를 이용한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성희롱은 전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렇지 못한 쪽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성희롱을 고용상의 차별로 보는 것도 이렇게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기 때문이다. 성희롱의 기본은 그것이 '원치 않는 행위'이며 원치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악의가 없거나 위장된 성희롱을 변호해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에 입증 책임도 문제

셋째, 우조교의 해임을 성적 접근거부에 따른 보복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것도 문제가 있다. 사회의 권력관계가 성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건의 평등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평등 영향 접근'이 유용하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놓고 그 영향을 평가해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성희롱한 상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직원을 해고는 하지 않지만 작업조건을 참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자발적 사임'이 아니라 '해고'로 보아야 하게 돼 있다. 우조교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1년 계약이라는 명분을 이용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

분하다. 이렇게 양성 사이에 조건의 평등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해 법원이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성희롱 항소심의 원심판결은 성희롱의 피해를 호소할 유일한 창구인 민사소송마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 고용평등법안에 포함시키거나 성폭력 특별법안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다시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겨레 신문 95.7.28 '더불어 생각하며'

(2심 판결문 내용이 너무 많은 이유로 자료집에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에 있어서 의학적인 대응 방안

1. 의학적인 처치의 중요성

강간에 대한 의학적인 처치는 치료와 보호이외에 처치 및 치료자체가 범인 식별의 중요한 단서(법의학적 차원)가 된다. 따라서 강간 후 의사의 의학적인 대응방안 이전에 환자 자신이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 자신의 기본적인 처치가 선행된 후라야 의사의 세밀하고 주의 깊은 의학적인 처치가 더욱 효과적이다.

1) 증거 보존

-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위기센터로 오게 한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보존한다.
- 증거품을 병원, 경찰서 등으로 가지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비닐은 습기가 차서 증거 소멸의 우려가 있다.)
- 강간당한 후에 절대 술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

2)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학적인 처치의 목적

- 강간에 의한 신체적 손상의 치료
- 성병 및 임신의 예방
- 법의학적 증거, 자료의 수집

- 피해자가 처해 있는 위기 상태의 조정과 치료의 개시
- 건강한 육체와 정신, 그리고 자아의 회복과 재활
- 정상적이나 대인관계의 정립 및 사회와 가족의 구성원으로의 복귀

2. 성폭력 피해 여성의 행동반응과 정신의학적 접근

1) 피해자의 상태

-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흐트러지며 신체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
- 악몽을 꾸고 사람을 피한다.
- 반복해서 생각한다든지 자꾸 놀라곤 한다.
-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 피해자의 정신상태는 분노를 드러내기 힘들며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시달린다.
- 남자를 기피하고 가족들의 반응에 예민해진다.

2) 정신과적 대응 방안

- 가족이나 친지가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진정시킨다.
- 피해자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속적인 치료, 상담을 한다.
- 용기 있게 대처한 것을 충분히 격려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감정을 실어서 사건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방어기제를 잘 활용하여 사건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피해를 당한 후 움직임이 적어

지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움직임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주의가 산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회복이 빠르다.

- 근친강간의 경우는 피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부모 모두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여러모로 얽힌 가족 관계로 인하여 후유증이 일반강간보다 훨씬 크므로 지속적으로 조심스러운 상담이 되어야만 한다.(대부분의 경우 가족 전체를 치료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산부인과적 측면

1) 순결의 의미

① 처녀막(hymen)

질구의 조금 안쪽에 질구를 덮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얇은 점막조직으로 손가락이 통과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어 월경이 나올 수 있고 성경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삼입식 생리대는 넣을 수 있다. 처녀막의 형태나 크기는 개인차가 있고 때로 구멍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일 경우도 있고 처녀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처녀막은 신축성도 개인 차이가 심해 성교나 출산 후에 다시 원상복귀도가 될 수도 있다. 첫번째 성관계에 의해 처녀막이 파열되어 혈혼 생가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40~50%에 불과하다. 혈혼이라고 해서 진한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혈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② 처녀막 재생술

한 두번의 성관계 후에 손상된 질 입구에 남아있는 처녀막의 조직들을 이어 붙여 다음 성관계시에 터지도록 재생시키는 수술이다. 본인의 불안감이 크다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처녀막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일인 것이다.

2) 임신 여부의 확인

①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약이용 방법

② 월경일이 규칙적인 경우는 임신 가능 기간 측정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즉, 다음 월경이 시작되는 전날로부터 거꾸로 세어서 12-16일 사이가 배란일이다. 정자가 자궁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3일간이다. 따라서 배란기간에 정자 생존기간을 더한 12-19일 사이의 8일간의 임신 가능 기간이다.

③ 임신 가능성의 약인은 피임당시의 월경력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성관계에 있어서는 월경의 성기로 임신이 될 가능성은 2-4% 정도로 적다.

④ 보통 피임약 72시간 이내에 DES(Diethylstilbestrol)나 과량의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위의 약물은 배란기일때,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한다.)

3) 낙태

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형법 제277조)

② 특정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이 가능하다.

③ 특정한 경우란,

i)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이거나 유전적인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 특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ii)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iii)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혹은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iv)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임신부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미성년자(만18세이하)가 인공유산을 할 경우는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하며 상담소에 서는 동반에 줄 수 없다.

⑤ 2-3개월까지는 쉽게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12-13주 사이에 태아는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5개월 이후 인공유산은 산모에게 매우 위험한다.

⑥ 자연유산과 달리 인공유산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⑦ 인공유산의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변동리 지역을 중심으로 2-3개월은 10만원, 3-4개월은 15만원, 5-6개월 이후는 50-60만원의 비용이 든다.

⑧ 인공유산 후유증 및 주의 사항

a. 자궁내에 인공유산의 잔류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균의 감염으로 자궁내막염, 골반염, 자궁출혈, 전신패혈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난관부위를 지나치게 긁어내면 난관이 막혀 불임이나 자궁의 임신 등이 생길 수 있다.

b. 수술할 때 기계에 의해 자궁내막의 손상, 자궁천공 파열이 생길 수 있다.

c. 인공유산 후 자연유산, 조산, 불임의 가능성이 있고, 반복해서 수술을 할 경우 영원히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 올 수도 있다.

d. 약을 이용한 인공유산

약국에서 사투비아등의 통경제(생리가 불순한 여성이 자궁내막의 출혈을 유도하여 생리를 조절하는데 쓰임)를 먹게 되면 과도한 자궁내막의 출혈로 낙태는 될 수 있으나 찌꺼기가 남게 되어 자궁 안에서 부패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유산이 안되었을 경우는 기형아를 낳게 될 수도 있다.

♣ M-R kit

- 가족 계획 초기에 인구 억제정책으로 시행되었다.

- 임신 8주 이전에 흡입방법으로 시술하나 실질적으로 유산과 동일하다.

♣ 상담소와 연계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이용

a.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를 의뢰 한다고 미리 연락한다.

b. 피해자가 산부인과의 갈 경우에는 진료비를 미리 알려준다.

c. 산부인과의에서 치료되는 내용은 임신여부의 검사, 성병검사(임질, 매독), 에이즈 검사, 정액채취, 초음파 검사, 에스트로겐 복용(임신예방)등이 있다.

d. 산부인과의에서 발급하는 소견서 : 일반 진단서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초진후 진술할 것

- 일반 진단서 : 객관적인 검사가 나온 것에 의사의 의견이 들어간다.
- 상해 진단서 : 몸에 상해가 있을 경우 의사가 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첨부한 것.
(위의 발급되는 3가지는 가격이 일정치 않으며 대략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1. 관련 법률 용어 정리

- 1) 고소 :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문서상으로 수사기관에 하는 것.
- 2) 항고 :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3) 구속/불구속 : 피의자(가해자)를 구속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 것인지를 말함.
- 4) 공판(기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공소시효는 사건발생 후 7년이다.
- 5) 공판(재판) : 재판 과정
 - ♣ 심리 -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재판의 전 과정(피고인 신문·증인 신문·참고인 진술·구형·최후변론·피고 최후진술·선고 순서임)을 말한다.
 - ♣ 항소 - 1심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판결후 7일 이내)
 - ♣ 상고 - 2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항소심 판결이후 7일 이내)
- 6) 불기소 : 5종류가 있으며 고소인에게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음.
 - ♣ 기소유예 - 수사 검사가 용서(주로 절도죄인 초범, 소년 범의 경우)하는 경우
 - ♣ 혐의 없음(무혐의) - 증거 불충분이다 기타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 ♣ 공소권 없음 -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 또는 내사 진정으로 인해 수사중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 ♣ 기소 중지 -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또는 증인의 행방불명 시 전국적으로 지명수배가 내리고 일정기간(5-7년)이 지나면 무효. 사실상 미결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 범죄 안됨 -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기각

- ♣ 구속영장기각(불구속 소사를 한다는 말) -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 없음.
- ♣ 공소 기각 - 관할 위한 공소취소, 즉 기소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로 소송의 종결을 말한다.

8)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강간서건 고소시 주로 패심죄로 적용
- ♣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3회이상 받을 경우 무고죄로 의심받고 있을 가능성 있음.
- ♣ 고소장 작성시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할 것.
- ♣ 허위나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이 인정될 때는 무고죄는 성립 안됨
- ♣ 무고죄는 주로 구속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좌절감, 패배감에 빠질 수 있음.

2 고소 절차 및 고소 준비

1) 고소 절차

- ① 고소장 작성 - 6하원칙에 의거해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사법서사에게 의뢰한다. 단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이때 나중에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해야 한다.
(상해 진단서, 편지, 녹음테이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첨부, 사건 진술 및 진정서 작성)
- ② 경찰, 검찰에 고소 -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지, 사건발생지의 관할 경찰서에 한다.
- ③ 경찰에서 가해자(피의자) 신문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피해자 진술조사 작성.
- ④ 경찰에서 가해자와 대질신문
- ⑤ 검찰에서 송치 - 보강수사, 기소여부 결정
- ⑥ 법원 - 재판(증인진술이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함)
- ⑦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 ♣ 이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고가 없으므로 1심재판이 열린 법원 형사과에 문의

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고소 기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성폭력 특별법)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함(94년 4월 1일 이후 발생사건에만 해당 됨)

- ♣ 공소시효: 강간 치상인 경우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7년 이내.
 ♣ 고소 후의 진행과정
 고소 → 수사 → 구속 → 기소(검찰) → 재판(구속시는 6개월 이내)
 ↓ ↓
 불구속 불기소

3)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기간

- ♣ 구속수사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 수사해야 함
(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사 3개월 이내)
- ♣ 기소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실시되어야 함.
- ♣ 재판 소요기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4) 성폭력 유형별 고소 준비

① 어린이 성폭력

- 어린이가 직접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부모등)만이 가능함.
-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자도 고소할 수 있다.

② **근친강간(성폭력특별법에서는 비친근죄로 분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제3자도 고소할 수 있다.

③ 賞 賜 上

강제 성행위 + 강간중에 상해(성병감염도 포함)를 입힌 경우는 비친고죄
(도망치다 넘어져서 다치는 것처럼 원인제공까지도 치상이 됨)

5) 변호사 선임비용과 요령

- ① 형사소송일 경우: 대개 1건당 200~300만원이상
 ※ 강간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원고는 검사이므로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 없음.
 (단,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
 ② 민사소송일 경우: 형사소송이 끝난 후 또는 형사소송과 동시에 소송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6) 합의불합 경우

- ♣ 고소후 법원 판결 이전까지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하면 친고죄인 경우 고소는 자동 취하되거나, 비친고죄(특수강간, 강간치상)인 경우는 형량에만 영향을 미친다.
- ♣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의 재산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1억을 요구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인상을 주어 무고죄로 구속된 경우도 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

죄명	대상	형	조문
특수강도강간	1.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한 절도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2.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죄를 범한 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5의 6
특수강간	1. 흉기휴대 또는 2인이상이 강간죄를 범한 때 2. 위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3. 위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4. 미수에 그친 자 5. 치사죄 6. 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1,2의 예에 외함 미수범 감경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이상의 징역	5의 7



6) 합의할 경우

♣ 고소후 법원 판결 이전까지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하면 친고죄인 경우 고소는 자동 취하되거나, 비친고죄(특수강간, 강간치상)인 경우는 형량에만 영향을 미친다.

♣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의 재산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1억을 요구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인상을 주어 무고죄로 구속된 경우도 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

죄명	대상	형	조문
특수강도강간	1.야간에 용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한 절도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2. 야간에 용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죄를 범한 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5의 6
특수강간	1. 용기휴대 또는 2인이상이 강간죄를 범한 때 2. 위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3. 위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4. 미수에 그친 자 5. 치사죄 6. 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1,2의 예에 의한 미수범 감경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의 7

